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플러스

교육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배포 2026. 11. 24.(화) 08:0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11. 24.(화) 국무회의 종료 시
(지 면) 2026. 11. 24.(화) 국무회의 종료 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월 3일(목)부터 시행
- 학술지원 성과를 지식재산권 등의 4개 유형으로 분류
- 학술지원 성과물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성과물의 체계적 관리 기반 구축

교육부(장관 직무대행 최은옥)은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술진흥법」(법률 제21724호, 2026.6.2. 공포, 12.3. 시행)에서 위임한 '인문사회 등 학술지원 성과의 소유 및 관리 절차'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가 창출한 학술지원 성과의 분류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 등')가 학술지원 사업을 통해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 논문, 저서·역서, 소프트웨어, 학술활동 과정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학술자원, 특허 등 지식재산권
2. 학술활동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
3.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는 결과물 및 제9조**에 따른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 (주요내용) 교육부 장관이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대학 등의 장 또는 연구자와 체결한 협약
   ** (주요내용) 사업비를 받은 대학 등의 장 또는 연구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학술활동 결과를 보고해야 함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유형·무형의 성과

2 학술지원 성과의 공동 소유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여러 대학 등이 공동으로 학술지원 성과를 소유하는 경우, 학술지원 사업의 유형 및 기여도를 바탕으로 한 성과 소유의 세부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 여러 대학 등이 각자 성과를 창출한 경우: 성과를 창출한 대학 등이 해당 성과를 소유
- 여러 대학 등이 공동으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 비율을 정하되, 대학 등 간의 협의에 따라 소유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학술활동의 일부 수행을 위탁받은 대학 등이 성과를 창출한 경우: 해당 학술활동의 일부 수행을 위탁한 대학 등이 소유

3 학술지원 성과의 국가 소유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국가안보 및 공공의 이익 목적 등 예외적으로 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 연구과제 협약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연구기관이 성과의 국가 소유에 대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학술지원 성과의 관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학술지원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기 위해 대학 등의 장은 성과의 목록, 소유 현황 및 활용 실적을 기록·관리한다. 그리고 이를 「학술진흥법」 제14조3항*의 전문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하도록 하는 등 성과의 세부적인 관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 교육부 장관은 학술정보의 체계적인 축적·관리 및 효과적인 유통·활용을 위해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제도적 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학술지원 성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였다. 이를 통해 학술지원 성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라며, “연구자가 창출한 귀중한 성과가 사회 전체로 널리 공유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 부서	대학정책관 학술연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흥윤 (044-203-6870)
		담당자	사무관	박형수 (044-203-6871)
		담당자	주무관	이혜리 (044-203-6879)

붙임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정 등) ① ---------- ---------- ---------- --- 전문관리기관(이하 “전문관리기관”이라 한다)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지급 대상자와 협의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학술지원성과의 소유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논문,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논문, 저서·역서, 소프트웨어, 학술활동 과정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학술자원, 특허 등 지식재산권 2. 학술활동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 3.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는 결과물 및 제9조에 따른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유

	형·무형의 성과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학술지원성과(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여러 대학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러 대학등이 각자 학술지원성과를 창출한 경우: 학술지원성과를 창출한 대학등이 해당 성과를 각각 소유 2. 여러 대학등이 공동으로 학술지원성과를 창출한 경우: 학술지원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결정. 다만, 대학등 간의 협의에 따라 학술지원성과의 소유비율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3. 학술지원사업에 따른 학술활동의 일부 수행을 위탁받은 대학등이 학술지원성과를 창출한 경우: 해당 학술활동의 일부 수행을 위탁한 대학등이 소유 ③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이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학술지원성과를 국내 소재 대학등의 소유로 하거나 해당 대학등이 우선적으로 학술지원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학술지원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⑤ 법 제16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항에 따라 학술지원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후 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⑥ 대학등의 장은 학술지원성과 중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하려면 특허출원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학술지원과제의 명칭 2. 학술지원과제의 식별을 위하여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학문 분야별 전담기관에서 부여하는 학술지원과제의 번호

	3. 학술지원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 ⑦ 교육부장관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2(학술지원성과의 관리 기준 등) ① 대학등의 장은 학술지원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학술지원성과의 목록, 소유현황 및 활용 실적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② 대학등의 장 또는 교육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학술지원성과를 전문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③ 학술지원성과를 소유한 대학등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